시정요구효력정지신청

이의신청인

성　　명　송 ＯＯ
(http://www.twitter.com/2MB18nomA의 이용자)

주　　소　1.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인동 132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담당 : 이지은 간사)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3가 227-1 우리타워 3층
진보네트워크센터 (담당 : 장여경 정책활동가)
3.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87-2 중앙서초프라자 105호
언론인권센터 (담당 : 윤여진 사무처장)

연 락 처　010-7365-2037, 02-723-5300(담당 이지은 간사),
02-701-7687(담당 장여경 정책활동가),
02-591-0541(담당 윤여진 사무처장)

전 자 우 편　2MB18nomA@gmail.com

※ 이번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가능하다면 **위 전자우편으로 처리결과 등을 회신 받았으면 합니다.** 만약 우편물을 보내실 경우 위 우편물 수령지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이번 이의신청 심의시 꼭 필요하다면 이의신청인의 개인주소와 전화번호를 밝히겠습니다.

이의신청대상(효력정지신청대상)

http://www.twitter.com/2MB18nomA에 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2011. 5. 12. 시정요구 일체

효력정지신청이유

http://www.twitter.com/2MB18nomA에 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2011. 5. 12.자 시정요구는 통신심의를 할 수 없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것으로 위법합니다. 또 트위터 계정 내에 게시된 게시물의 내용이 아닌 트위터 ID, 트위터 서비스 이용을 위한 접속 URL(http://www.twitter.com/2MB18nomA) 자체는 심의대상인 "정보"가 아니라 정보"체계"에 불과하여 위 시정요구는 심의대상이 아닌 것을 대상으로 한 심의, 의결이었으므로 위법합니다.

그리고 "18nomA"부분이 연상시키는 욕설은 사회일반에서 널리 쓰이는 욕설로서 특히 정치인인 대통령에 대한 불만, 비판, 반대의사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또 욕설로 보더라도 정보통신 심의에 관한 규정 제8조 중 제2호 바목의 "과도한 욕설 등 저속한 언어 등을 사용하여 혐오감 또는 불쾌감을 주는 내용"에서 규정한 "과도한 욕설"에 이르지 않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수준의 욕설이고, 이 욕설로 일반적으로 혐오감, 불쾌감을 준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2011. 5. 12. 이후 현재까지 위 트위터 계정에 이용자인 저도 접근하지 못하고 있고 국내에서는 저의 팔로어들은 물론이고 일반 이용자들의 접근이 차단되어서 불편이 많습니다. 현재 우회접속을 통해 트위터를 사용하고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임시방편에 불과하여 정상적인 트위터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하루빨리 이번 시정요구의 취소를 바라면서 이의신청을 합니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전이라도 정보통신 심의에 관한 규정 제20조에 따라 이번 시정요구의 효력 또는 그 이행을 정지시켜 제가 트위터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2011. 5. .

이의신청인 송 O O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귀중